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19일, 조은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3.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2026.3.13.) 상정,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2026.4.17.) 상정,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은회의원)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공식적인 정당의 지역조직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당이 지역주민들과 보다 가까워서 의사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2005년 「정당법」 재개정을 통하여 시·도당 이하 지역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법정 조직이었던 이전의 지구당과 달리 당원협의회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임의기구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

현행법은 정당이 당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 단위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규정하고 있음.

조은희의원안은 지역당 부활 여부와는 별개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에 한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지역 단위 정치·행정의 거점으로서 당원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은 지역당 도입 여부에 따라 논의의 전제가 달라지는바,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된 당원협의회를 지역당 도입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의 조직 운영으로 인한 이중적 부담은 없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설치단위에 대한 추가적

인 검토가 요구됨.

반면, 현행과 같이 지역당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 전 지구당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 온 당원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조은희의원안과 같이 비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보다 정기적이고 공신력 있는 지표인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나, 정당 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 서일준)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소 현황 등에 관한 중앙당의 정기보고 시한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당원협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당원협회의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회에 한정하도록 하고, 시·도당이 해당 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무소 설치 제한 및 경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당의 정기보고 신고시한을 2월 15일까지로 하고, 허위등록신청죄의 구성요건을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당원협회에 사무소를 둔 자”로 규정한 제59조제1항제3호도 “제37조제3항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로 수정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5조제3항 중 “1월 31일까지”를 “2월 15일까지”로 변경한다.

안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안 제5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5조(정기보고)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5조(정기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 른 당원협의회 현 황(당원협의회가 사 무소를 둔 경우에 는 그 사무소 현황 을 포함한다)을 다 음 연도 1월 31일 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35조(정기보고)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2월 15일 까지----- ----- -----.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④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연간 활동실 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 ----- ----- -----.	⑤ (개정안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 정당은 국회의 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신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은 국회의 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 당원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정한다.

④ 시·도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정당은 국회의 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 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삭제>

	<u>운영을 위한 경비</u> <u>를 지원할 수 있다.</u>	
제59조(허위등록신청 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 죄 등) ① ----- ----- ----- ----- ----- -----.	제59조(허위등록신청 죄 등) ①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 음)	1.·2. (개정안과 같 음)
3. <u>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 의 규정을 위반하 여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 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u>	3. <u>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을 위 반하여 당원협의 회에 사무소를 둔 자</u>	3. <u>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후 단 을 위반하여 국 회의원지역구마 다 사무소를 2개 소 이상 설치한 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57조 중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정기보고)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정기보고)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정기보고)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35조(정기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③ (생 략)</u> <u>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⑤ -----제4항-----</u> ----- ----- -----.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 략) <u>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u>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u>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

-- 제35조(정기보고)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② (생 략)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2. (생 략) 3. <u>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u> 보고를 해태한 자 ② (생 략) ③ ~ ⑤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35조(정기보고)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u>-----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